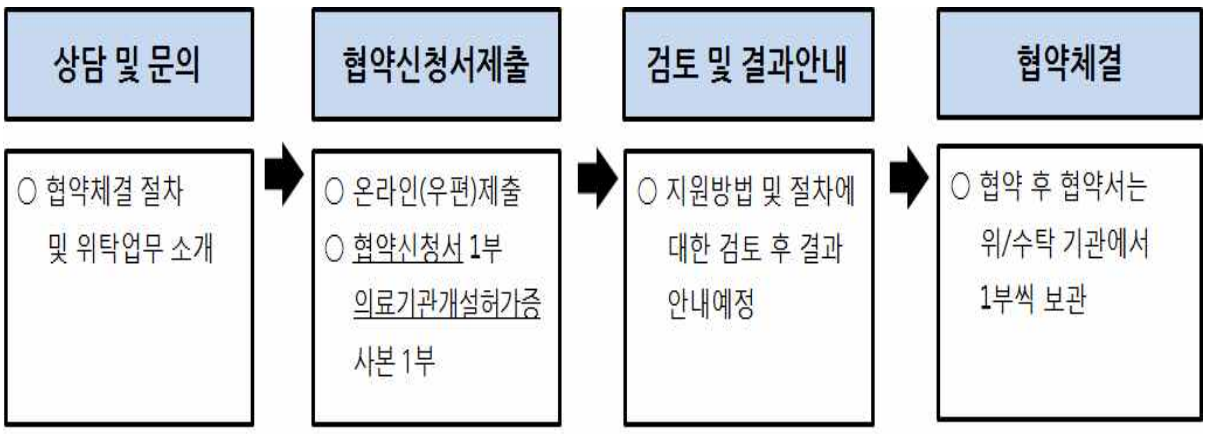
충북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위탁 협약 안내

1 충북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

○ 「호스피스·완료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8년 4월 충북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5항, 6항에 근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되었음.

명 칭	충북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소 재 지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개신동)
담당부서	의료사회사업실 / 연명의료팀
담당자 연락처	043-269-8817

【업무협약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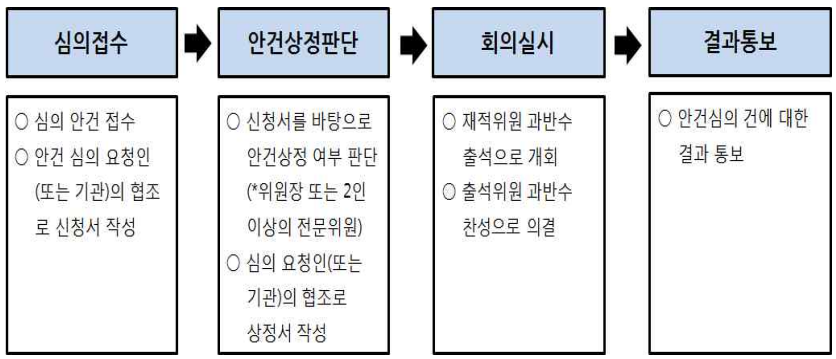


○ 협약 기간은 협약일(협약기관대표자 서명일)로부터 1년이며, 별도 요청 없을 시 자동연장을 원칙으로 함.

○ 위탁기관은 협약체결 후 협약서를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에 등록하여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음.

2 공용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범위

○ 위탁기관은 공용윤리위원회와의 협약을 통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과 관련된 상담, 심의, 교육 등 아래의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음.

<table>
<tr><th>연번</th><th>위탁업무</th><th>내용 및 방법</th><th>비고</th></tr>
<tr><td>1</td><td>상 담</td><td>○ 연명의료중단등 결정과 관련된 환자(및 가족)와 의료인의 요청 사항에 대한 내방 또는 전화 상담 실시
*장소: 충북대학교병원 서관 7층 연명의료상담실
*시간: 평일 09:00~18:00
*전화: 043-269-8817</td><td>점심
시간
12:00
~
13:00</td></tr>
<tr><td>2</td><td>심 의</td><td>○ 위탁기관에서 신청한 상담 중 윤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는 환자와 의료인의 요청 사항을 심의함.
○ 심의절차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와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거부하여 담당의사의 교체에 관한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td><td></td></tr>
<tr><td>3</td><td>교 육</td><td>○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횟수 : 연 1회 (시기: 위탁기관과 협의)
○ 교육내용 : 연명의료결정제도 소개 및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 절차 안내
○ 교육 시행 후 공용윤리위원회는 교육 내용 및 이수자 명단 등을 기록하고 관리함.</td><td></td></tr>
<tr><td>4</td><td>기타</td><td>○ 위탁기관에서 시행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의 실적 및 통계 분석등을 통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td><td></td></tr>
</table>

3 협약체결 세부사항

○ **(협약기간)** 협약 기간은 협약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 가능(별도의 요청이 없으면 자동 연장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신청서 1부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1부
- 기타 협약을 위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진료과목, 병상 수 및 의료진 규모 등 위탁기관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

○ **(체결방법)**

-협약절차에 따라 협약 실시 후

-위탁기관 대표자 및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날인한 공용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서 각 1부씩 보관

-제출방법 : 협약서 원본서류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주 소 :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개신동)
충북대학교병원 서관 7층 연명의료상담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신청서

기 관 정 보			
의료기관명			
기관장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관구분	☐ 병원 ☐ 요양병원 ☐ 기타 ( )		
진료과목			
의사 수		병상 수	

담 당 자 정 보			
성명	(서식취합 및 등록담당자)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협 약 사 항	
협약신청사유	
협약신청기간	협약체결일 ~ 협약체결일로부터 ( )년

위와 같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일자: 년 월 일

협약신청의료기관장: _____(인)

충북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공용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서

00 의료기관(위탁기관)과 충북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수탁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의 위탁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의 위탁 수행과 관련하여 위탁기관과 수탁 공용윤리위원회 간 구체적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업무】

가. 위탁기관의 환자 및 환자가족이 요청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상담
나. 위탁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다. 위탁기관에서 요청한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담당의사 교체에 관한 심의
라. 위탁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마. 위탁기관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통계 분석,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제3조【공용윤리위원회의 의무】

공용윤리위원회는 위탁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되, 해당 업무를 수행할 시간, 장소, 방법 등 위탁 업무의 수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협약 당시 위탁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기관의 의무】

위탁기관은 위탁 업무의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가 제시한 계획을 기관 내에 안내하고, 소속 의료인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공용윤리위원회가 협약 이행을 위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 비용】

위탁기관의 장은 업무 위탁을 위하여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2의 위탁비용을 협약 개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용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 사무국에 지급하고,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야 한다.
위 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탁기관이 지급해야 하는 위탁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때, 위탁비용은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개시 후 5일이내 해당 공용윤리위원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 유지】

양 협약기관은 본 협약 또는 법령 등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동의 없이 본 협약과 관련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7조【효력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양 협약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단,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해지에 대한 별도의 서면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제8조【협약의 해지】

협약에 따른 의무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일방에 의해 협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 기관은 그 사유를 공용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탁기관과 수탁 공용윤리위원회는 본 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고 사본 1부를 공용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 사무국에 송부한다.

년 월 일

00 의료기관의 장

충북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